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동아리 운영규정

<개정 2019.03.05.>

제정 : 2013. 4. 1.

개정 : 2019. 3. 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동아리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 000반 동아리’ 라 칭한다.

<개정 2019.03.05.>

제2조 (정의)

동아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패를 이룬 무리’ 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로 같은 기호 및 취미를 가진 노인들이 문화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소집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목적)

동아리는 복지관 내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 및 친목을 통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유지하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대내·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목표)

- 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 ② 적극적인 자조모임 및 활동을 통해 노년기 자아통합에 기여한다.
- ③ 동아리간 연계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한다.

제5조 (수행인력)

- ① 사회복지사 :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동아리 담당 강사 : 대외활동을 지원하며 자문 역할을 진행한다.(해당 프로그램에 한함)
- ③ 동아리 대표 및 임원진 : 동아리 운영의 책임자로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활동활성화에 힘쓴다.

제 2 장 신 청

제6조 (구성)

- ① 노인 자체 결성 : 기호와 취미가 같은 노인들이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할 수 있다.

- ② 복지관 개입을 통한 결성 : 사회교육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단계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자체적 모임이 가능해질 때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③ 관내 동아리 활동시 필요한 각 실의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활용은 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설립)

- ① 신규동아리 설립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최소 10명 이상 **최대 40명 이내의 인원**으로 활동신청 서명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지관에 제출한다.
단,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9.03.05.>

- ② 현재 조직된 동아리와 동일한 성격의 신규 동아리는 신청을 제외한다.
- ③ 신규동아리가 결성될 경우 기존 동아리 시간외에 활동 시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동아리 활동 시 필요한 각 실의 이용여부는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이 우선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활동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9.03.05.>

- ④ 기존동아리의 경우 매년 전년도 활동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03.05.>

- ⑤ **기존 또는 신규동아리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기간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으로 하며, 기간 만료된 동아리는 매년 재신청하여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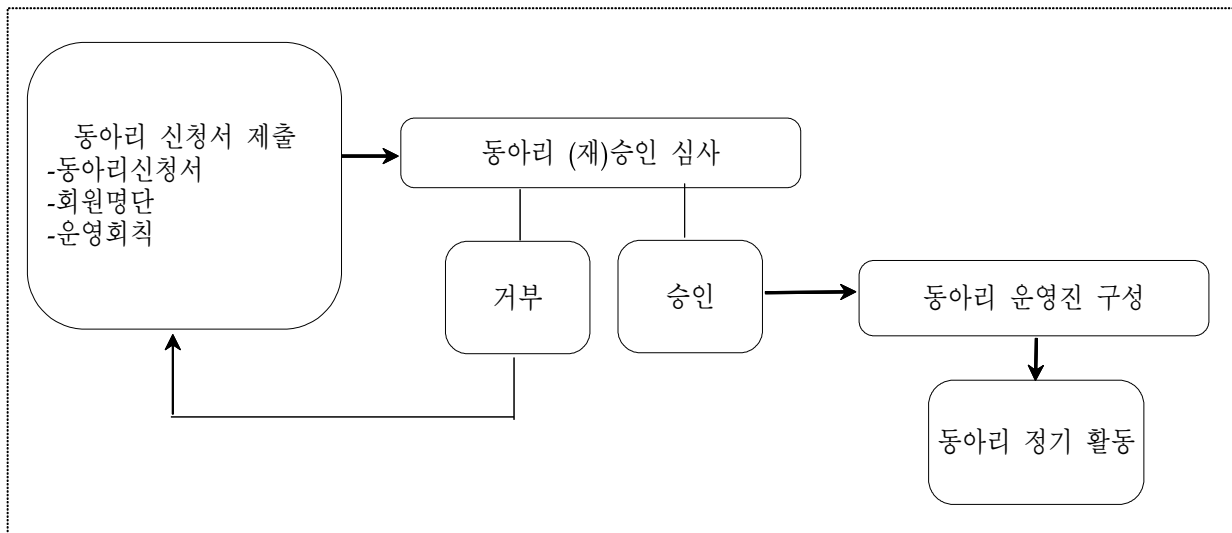
<신설 2019.03.05.>

- ⑥ **동일시간대 및 동일장소에 복수 이상의 동아리 설립을 신청할 경우 기관에서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9.03.05.>

제8조 (심사)

1. 동아리의 목적, 운영회칙, 활동신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승인한다.



제 3 장 회 원

제9조 (회원의 자격 기준)

복지관 회원으로서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고 동아리의 준수사항을 지키고자 서약한 자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회원은 동아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회칙에 의해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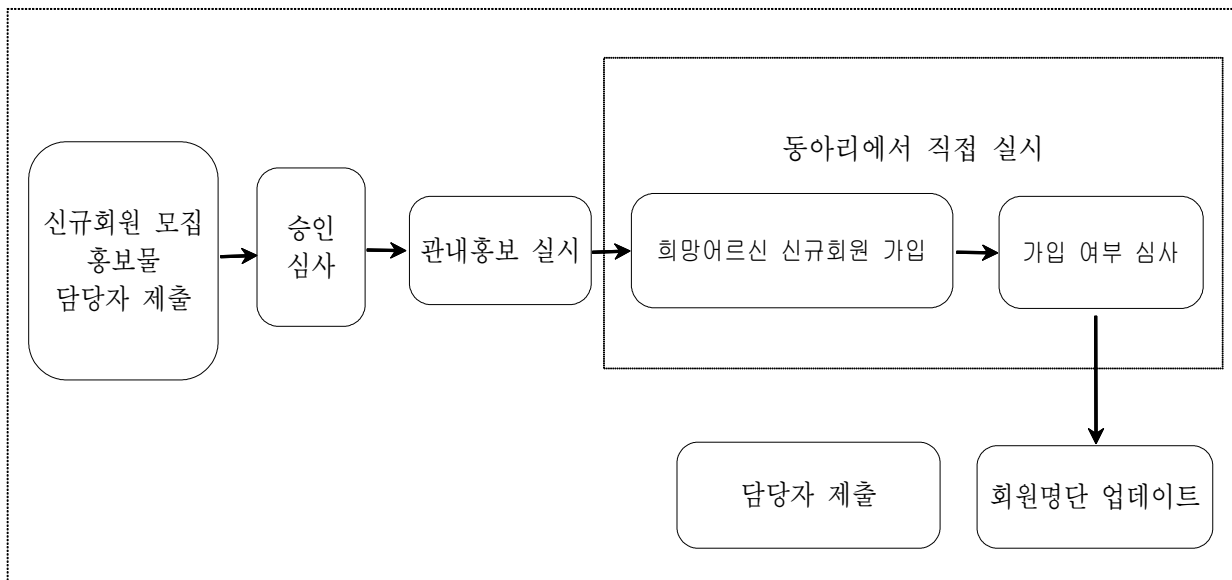
회원은 복지관에서 제정한 운영지침과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복지관 및 활동에 방해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 등 동아리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제한)

동아리에 가입한 회원은 복지관에서 제정한 운영지침과 동아리의 회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복지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에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와 임원진이 합의한 의사결정에 의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모집)

- ① 동아리 신규회원은 동아리 임원 및 담당자와 협의 하에 모집할 수 있다.
- ② 승인된 동아리가 신규회원 모집을 희망할 경우 홍보물을 접수하여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신규회원은 동아리에서 직접 모집하며 회원 적격 여부는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여 확정한다.
- ④ 담당자는 동아리 운영진으로부터 최종 정회원 명단을 갱신하여 참여자를 확인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 (임원)

동아리 임원 구성은 반장(대표자) 1명으로 운영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임원의 개인 사유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임원의 재선출이 가능하며 임원이 회원들과 불화발생,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저해하거나 복지관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 시 담당 사회복지사의 재량으로 재선출이 가능하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동아리를 대표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과 회원들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회원들의 출결관리와 동아리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제16조 (임원선출)

각 동아리 전체회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5 장 정기모임 및 운영

제17조 (활동)

동아리 활동은 **기관과 협의하에** 활동요일 및 시간,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동아리 활동시간은 **당일 1회(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9.03.05.>

제18조 (동아리 간담회)

- ① 동아리 간담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② 동아리 간담회는 회원 상호간 동의 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③ 필요에 따라 반장 및 담당 사회복지사가 임시모임을 소집한다.
- ④ 모임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반장 후보는 회원이 구두 추천하고, 동의를 받아 자격을 취득하고 반장은 투표로 선출한다

제19조 (운영방법)

- ① **기관은** 대표 운영진 구성, 강사섭외 및 모임 활동내용 등 운영은 동아리에서 최대한 최대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19.03.05.>

- ② 담당 사회복지사는 연 2회 동아리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며 간담회를 통해 복지관 사업내용을 전달하고 대표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③ 외부 행사 참여시 동아리 대표는 **기관에** 출전 및 수상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9.03.05.>

- ④ 동아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토의할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9.03.05.>

제20조 (동아리 회원자격 박탈)

- 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복지관 **등록회원**이 아닌 자

<개정 2019.03.05.>

2. 소행이 불량한 자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격을 띤 활동을 할 경우
4. 기관 및 사업운영규정, 회원수칙 등을 거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
5. 회원, 직원, 강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하는 자
6. 직원 및 상호간에 욕설 및 폭력을 행하는 자
7. 교육의 목적 외에 수강생(회원)에게 금품을 수납하는 자

제21조 (동아리 해체)

- 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아리를 해체시킬 수 있다.

1. 동아리 출석인원이 회원의 평균 70%이하일 경우
2. 각 동아리의 활동이 매우 부진하거나 회원수가 동아리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미리 정한 활동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산 할 수 있다.
3. 복지관 사업이나 행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4. 동아리실 이용 후 복지관 기물을 파손이 잦거나 도난사건이 발생 할 경우
5. **동아리 활동 중 회원운영규정 및 동아리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 2019.03.05.>

6. **동아리 회원이 강사, 대표 및 임원진 등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금품(식대비, 교통비, 명절 및 스승의날 선물 등)을 전달할 경우 즉시 해체한다.**

<신설 2019.03.05.>

7.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격을 띤 활동을 할 경우
8. 회비 모**금으로 인한** 문제 발생했을 동아리 회장 및 동아리 모임은 즉시 해체토록 한다.

<개정 2019.03.05.>

9. 동아리 운영규정과 동아리 취지에 위배되어 활동할 경우 **기관은**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동아리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개정 2019.03.05.>

제 6 장 재 정

<삭제 2019.03.05.>

제22조 (회비의 활용)

- ① 회비는 동아리 대표가 정기모임의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실비(월 5,000원 이하/인)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일체의 적립을 금한다.
- ②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회비의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할 경우 동아리의 대표는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삭제 2019.03.05.>

제23조 (회비의 용도)

- ① 회비는 동아리 활동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 제반경비, 여행자 보험료 및 기타 천목도모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삭제 2019.03.05.>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